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1. 9.
조례안심사특별위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1. 8. 20

나. 제 안 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1. 9. 25

라. 상정일자 : 91. 9. 26

2. 제안설명의요지(提案說明者 稅務課長 이동복)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 례중 개정조례준칙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것으로 간주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공공용지 도시계획 시설 정되고 난 후 5년이 경과되면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으로해서 납세의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현행 조례는 공공수용대상으로 고시한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하 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는 공공시설 로 지정된후 5년이 경과하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을 감면토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조례는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

표준액의 50%을 감면하고있으나 이를 완화시켜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된 후 5년이 경과하면 종합토지세액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용지에 편입된 주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이 있을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가. 찬　　성 : 현행조례는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토지에 한하여 종합토지세액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할 경우 공공수용대상으로 지정된후 5년이 경과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지주에게 주어지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찬성자 : 배영칠, 김석봉, 우승기, 시회준, 김영수

나. 반　　대 : 없음

5. 심사결과

원안가결

6. 심사보고 유첨 : 조례안

가. 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에관한조례중다음과 개정한다.

제2조(불균일과세)중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대상으로 고시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부터 적용한다.